| 웅지세무대학교 | 원격수업관리위원회 규 정 | 문서번호 | 6-3-19(D)-0 |
|---|---|---|---|
| | | 제정일자 | 2021.07.07 |
| | | 최근개정 | |
| | | 주관부서 | 교학처 |
| | | | 교무팀 |
| | | 홈페이지공개 | 공 개 |

**웅지세무대학교 교학처**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웅지세무대학교 원격수업 콘텐츠의 질 관리와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·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원격수업관리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위원회에 관한 정관, 학칙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.
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원격교육 계획 및 기획
2. 원격교육 강좌 품질 관리
3. 그 밖에 원격수업 질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
4. 기타 원격수업에 수반되는 중요 사항

제4조(구성) ① 위원회는 교직원, 학생, 관련 전문가 등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(定數)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한다.
② 위원장은 교학처장으로 한다.
③ 학생위원은 총학생회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하고, 그 밖의 위원은 교학처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.
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주관부서 직원이 된다.

제5조(임기)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② 위원의 자격상실,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제6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8조(회의록 작성)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9조(운영세칙)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불비한 사항은 본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.

부 칙 <제1판-제정 2021.07.07.> <시행 2021.03.01.> <공포 2021.XX.XX.>

이 규정은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.